

2022년 제1호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 UNESCO ISSUE – – BRIEF

사이버 공간에서 차별·혐오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는  
유네스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제언 및 논의 확산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간하며,  
집필자의 의견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원고 중간 발표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필자가 작성하였습니다.

**중간 발표회** 2022년 8월 16일

발표 | 김수아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토론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홍남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2022년 제1호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 UNESCO ISSUE BRIEF

사이버 공간에서 차별·혐오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사이버 공간에서 차별·혐오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김수아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 I. 들어가며

온라인 공간<sup>[1]</sup>의 혐오차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cyber)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폭력이라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익명성, 유포성과 같은 온라인 공간의 기술적, 문화적 특성들은 혐오와 차별 표현의 확산을 더욱 증폭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의 양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하여,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언어 폭력, 성원권 배제 등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다층적인 양상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양식을 빌려 나타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의 문제<sup>[2]</sup>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혐오표현 경험 정도를 조사하는 각종 조사 연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21:9)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기준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생활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을 한 사람은 70.3%이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경험이 62.0%,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경험이 53.2%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다. 20대에서는 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온라인 문화 경험이 적은 노년층에서는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이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조사된 통계 수치는 온라인 공간에 혐오표현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6%가 혐오표현을 경험한 일이 있다고 답해 2021년 조사에 비해 그 정도가 혐오표현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9).

이처럼 우리 사회에 온라인상 혐오표현이 만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논의는 종종 표현의

[1] 사이버 공간과 온라인 공간의 두 개념은 일상 생활에서는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되고 있는 편이다. 사이버 공간으로 명명할 때는 보다 가상성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이란 말이 인터넷 발달 초기의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별도 공간으로 상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온라인 공간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2] 이후에도 논의하겠지만, 여기서 표현의 범주는 언어적인 것뿐 아니라 이미지와 행위 등 다층적인 양태를 모두 포함한다.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담론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규제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는다. 온라인 공간의 정보가 무한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개별 혐오 표현들을 모니터링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 중심 규제가 강조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게임 채팅에서 차별 비하 표현을 규제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의 자동화된 필터링을 예를 들면, 기술적 한계뿐만 아니라 ‘어떤 표현이 혐오 차별인가’에 대한 정의에 따라 필터링이 영향을 받으므로 이와 관련한 데이터 편향 문제 등이 제기된다. 최근 AI 등 기술중심의 혐오표현 연구팀이 조사하는 혐오표현의 범위에는 좌빨이나 수꼴 등의 정치적 진영 비하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데(중앙일보, 2022.06.27.), 이 역시 혐오표현의 대상과 혐오표현의 표현 양태에 대한 고민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

혐오표현은 단순 욕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매우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욕설과 비하 표현 중에서 혐오표현을 구분하여 논의하는 이유는, 그러한 표현이 단순한 비하와는 달리 표적 집단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때문이다(이승현 외, 2019). 그런데 기술중심적 접근에서는 혐오표현을 모욕이나 욕설로 범주화하기 때문에, 표적집단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차별성이라는 문제를 제외한 채 혐오표현을 모욕이나 욕설과 병립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좌빨’과 ‘수꼴’, ‘틀딱’과 ‘잼민’, ‘김치녀’와 ‘한남’ 등의 대립항을 제시하면서 포괄적인 욕설 표현에 대한 규제를 혐오 비하 규제와 동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정치적·역사적 맥락에서 ‘빨갱이’라는 낙인 찍기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을 고려한다면 ‘좌빨’이라는 표현과 ‘수꼴’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서로 등치되는 것이라고는 주장할 수 없다.

욕설과 혐오를 동치하는 관점은 사실상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공적 규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3호 바목의 ‘차별·비하 표현’ 조항에 따라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혐오차별의 효과에는 주목하지 않은 채 그것의 모욕적인 측면에 더 집중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 규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수아 외, 2020).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제는 ‘차별의 금지’가 아닌 ‘사회 통합 및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의 원칙과도 어긋나고 사회적 차별의 효과도 제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전창영 외, 2018).

이러한 공적 규제의 한계가 분명한 가운데, 자율 규제 및 형성적 규제, 즉 혐오표현이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규제의 맥락 역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홍성수 외, 2016). 형성적 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혐오표현의 규제가 더 많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형사법적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자율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시민 교육

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율규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노력 외에 시민성 교육의 일환으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해악은 소셜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날로 커지고 있으며, 현실적이며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다. 뉴스 댓글로 인한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온라인 혐오차별 표현과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언론인권센터는 댓글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한상희, 2022). 대안으로 제안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도 그러한 교육의 장기적 목적에는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피해를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한상희, 2022).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아우르면서 혐오표현의 개념과 혐오표현의 해악 및 규제에 대한 논의들을 일별하고, 그 대안으로 논의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할지를 다루고자 한다. 또한 규제의 근간으로서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한계는 분명하며, 현재 상황에서 자율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역시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정책 대안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혐오표현의 개념과 쟁점

### 1. 혐오표현의 개념

다양한 주체들이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있다. 학술적 정의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들도 규제 대상으로서의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경우, 플랫폼 업체들이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정체성 등에 따라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민간단체인 ILGA-Europe은 혐오표현을 '특정한 그룹에 대해서 증오, 차별과 적대를 유포하고 선동하며 확장시키고 정당화하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Fortuna and Nunes 2018:4).

포르투나와 누니스(Fortuna and Nunes, 2018:5)는 기존의 학술적 정의와 플랫폼들이 내린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혐오표현을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먼저 혐오표현의 대상은 특정한 표적 집단으로서, 해당 그룹의 특성, 즉 민족적 기원이나 종교 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며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이다. 혐오표현은 이러한 표적 집단에 대한 폭력 혹은 증오를 선동하며, 공격적이고 상대방을 위축시키며 폄하하는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 역시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 규제 원칙에 따라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은 혐오표현을 '보호받아야 하는 특성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공격'이란 폭력적이거나 비인간적인 표현을 하는 것, 비하하는 것, 배제 또는 분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Facebook, 2019). 이러한 맥락에서 페이스북은 배제 또는 분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백인 우월주의 콘텐츠를 차단 대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혐오표현을 역사적인 특수성을 가진 집단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한다. 표적 집단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이와 같은 정의는 혐오표현에 대한 국내 연구와도 조응한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리포트(이승현 외, 2019:12)는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혹은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대상 조건, 즉 특정한 속성을 가진 집단의 의미는 사회가 특정한 속성을 부여해 구성된 집단의 의미로, 물역사적으로 정의되는 집단이 아니라 해당 사회에서 다루는 차별의 범주들이 고려된 집단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

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누적적인 것으로 개념화된다. 이처럼 차별 대상을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면 국가별로도 특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타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만연하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차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부정적 감정 역시 혐오 표현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았는데, 이는 그러한 것들이 단지 감정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흔히 과학적 사실로 간주되는 통계가 구조적 맥락을 누락한 채로 유통됨으로써 차별의 정당화에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이승현 외, 2019: 13-17).

이러한 한국의 혐오표현 개념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것이 차별의 문제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혐오(hate)는 단지 개인적 정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사회적 차별을 유발하거나 강화하는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홍성수, 2019a). 사회적 편견이 혐오로 표출되면서 집단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홍성수는 혐오를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차별과 편견을 발화하는 것이 혐오표현, 이를 실행하는 것이 차별이 된다고 하였다(홍성수, 2019a: 204).

혐오표현의 정의에서 표적 집단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희옥(2022)은 혐오표현을 정의할 때, 표적 대상의 집단화, 다수 집단과의 차별적 요소인 인종, 성별, 성적체성, 장애, 출신, 지역 등 기타 소수자의 특성을 이유로 구분하는 것, 그 집단을 향한 위협, 부정, 적대 언행을 하는 것을 주요 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혐오표현이 결과적으로 해당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축 및 차별 심화, 폭력 등을 선동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차별, 폭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표현 그 자체에서의 고의성으로, 의도적으로 피해 집단을 특정한 요소로 구분하여 적대시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김민정(2014 :148-151)은 혐오표현의 대상을 역사적·사회적 소수자로서 정신적·신체적 핍박을 받은 집단이라 규정한 후, 차별, 적대 혹은 폭력이라는 결과를 유도하는 직접적 선동 행위는 물론 혐오의 감정을 옹호하고 확산하고 정당화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여 정의한다.

종종 서구에서는 형법상 혐오표현 금지를 규정하면서 혐오표현의 정의를 선동 행위에만 한정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차별적 언동을 모두 포함해 혐오표현의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홍성수, 2019a). 이러한 논의들을 정리하여 보자면, 혐오표현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특정한 속성을 갖고 있으며, 그 속성은 역사적으로 구성된 차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혐오표현이 이러한 맥락에서 차별을 강화하거나 유포하거나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 2.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혐오표현의 문제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의 만연이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 규제는 다른 권리와 조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혐오표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혐오표현의 화자의 발언을 제한하는 것도 화자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을 서로 다투는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철학적으로 혐오는 관습적으로 고착된 의식과 밀착되면서 발생하는 무의식적 차원과 관련이 있다. 윤은주(2022)는 이러한 무의식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혐오를 사적 차원과 공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만약 혐오가 사적 감정 영역에 한정된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감정의 표현을 통해 타인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공적 현상이고 문제적인 현상이 된다. 공적 혐오는 의도적인 재구성이 작동하면서, 폭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고 공적으로 발생하는 혐오의 결과에 모두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든다. 또한, 공적 혐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평판의 손상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데, 이러한 평판 손상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는 효과가 나타난다(윤은주, 2022). 그러므로 혐오표현은 그 효과를 고려하면서, 공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규제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공적 차원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세계 각국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혐오표현을 형사법적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독일과 같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 국가도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동원되는 것은 미국 법제도의 논리다. 수정헌법 2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 혐오표현의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법원이 주장하는 바는 만약 토론을 통해 오류를 확인할 수 있고 교육으로 해악을 줄일 수 있다면, 표현을 중지하여 침묵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표현을 장려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이 혐오표현의 규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매우 긴급한 상황이나 명예훼손 혹은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한 제한을 둔다(이재진, 이영희, 2020).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연령 또는 장애 등에 근거하여 비방하는 혐오와 관련하여,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 역시 보호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언론자유에 대한 미국 헌법의 입장이라는 점은 최근에도 확인된 바 있다(이재진, 이영희, 2020: 201).

반면 유럽은 나치즘 등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혐오표현 규제에 보다 적극적이다.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주에 있는 것으

로 보지만 그 안에서 이익형량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이현정(2022)은 혐오표현의 화자와 혐오표현의 대상을 중심으로 혐오표현의 정의를 재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혐오표현의 ‘화자’에게 가해지는 형사법적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혐오표현의 대상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 의무를 위반하여 차별 금지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헤아리기 위해 언급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고려 요소는 ▲혐오 표현의 배경 및 전후 맥락 ▲혐오표현 내용에서 폭력, 증오, 무관용을 선동하거나 정당화하는지 여부 ▲혐오표현 발화의 형식이 직간접적으로 특정 그룹에 대한 위해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이현정, 2022: 542).

개별 국가 내에서 혐오표현을 형사법적 규제의 맥락에 두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경우 혐오 범죄의 대상을 규정하여 온라인상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범죄자의 동기가 피해자의 장애,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에 대한 적의에 비롯한다면 가중 처벌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혐오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이재진, 이영희, 2020).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의 혐오표현 규제 입법례를 분석한 박지원(2016)은 이들 국가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불변의 특징을 근거로 하는 혐오표현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온라인상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통신 관계법 역시 제정 혹은 개정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을 보였다.

요컨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가치는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경우 혐오표현과 혐오 범죄를 분리하여 판단하지만, 유럽에서는 표현이 혐오 범죄를 유발하거나 혹은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적 악영향을 근거로 하여 혐오표현의 형사적 규제가 가능하다. 또한, 형사적 규제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율규제의 맥락에서 무엇이 혐오표현이고 그 해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무조건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로 작동하게 된다.

### 3.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논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러한 논의에서는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가 두 가지 방향의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혐오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입장과, 혐오표현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입장이다. 전자의 주장은 전통적인 미국적 표현의 자유 담론을 대변한다. 이준웅과 박장희(2018)는 현재의 국내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모든 더러운 말’에 대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하면서, 국가가 이러한 혐오표현 규제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할 수 있으며 혐오표현의 규제는 시민의 역량에 근간한 자율규제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앞서 논의되었듯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 규제가 표현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논의는 특히 형사법적 규제와 같은 정부 주도의 규제에 대한 반대로 이어진다.

이와 반대로 혐오표현의 규제가 없다는 사실이 표현의 자유 위축을 가져온다는 입장도 있다. 이는 특히 소수자들의 입장에서 그러한데, 유네스코는 2021년 여성 기자들에 대한 성적 모욕과 공격이 기자들의 언론 활동을 막고, 장기적으로 공적 공간에서 발화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축소시키는 위축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보고서 <The Chilling: Global trends in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ists>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온라인 공격이 일종의 여성혐오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해당 공격을 온라인 폭력으로 개념화하면서 법제도적·자율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Posetti et.al., 2021). 그래야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차별과 혐오의 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상반되는 관점이 등장하는 이유는 결국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표현의 자유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조건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시민은 모든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추상적인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수많은 차별과 폭력의 맥락 속에 놓여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폭력을 규제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온라인 공간의 특징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제기되는 주장이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표현과 관련해서 더 날카로운 대립이 만들어진다. 온라인 공간이 기존의 다른 미디어 공간에 비해 보다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곳이라는 신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유튜브(Youtube)에 대한 규제 논의에서는, 유튜브는 개인의 발언을 보장하는 미디어라야 하므로 자율 규제조차도 과도하며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노현숙, 2022).

이와 같은 입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이 개인의 사적 의견임을 전제하며 따라서 가능한 많은 표현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는 입장이다. 한편으로는 온라인상에 제시되는 수많은 사적 발화들을 규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즉, ‘누구의 표현의 자유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누가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 역시 규제 논의에서 쟁점이 되

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표현은 온라인 공간의 정보가 무한할 정도로 많고, 쉽게 유포된다는 특성 때문에 확산이 쉽다. 소셜 미디어가 혐오표현을 쉽게 유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네트워크화된 소셜 미디어의 특성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특정한 공간의 게시물은 해당 커뮤니티의 가입자만 확인할 수 있지만, 소셜 미디어상의 게시물은 친구 관계로 시작하여 알고리즘적 유포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셜 미디어 사업자들의 대응이 요구된다. 박아란(2020)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혐오표현 확산과 관련하여 미디어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 제공자가 아니라 일종의 미디어이며, 디지털 정보의 확산과 게이트키퍼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사업자들은 최근 기술적 접근법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정보의 양이 유포와 확산을 통해 폭증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을 기술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모델 개발이 활발하며(Meske & Bunde, 2022), 이 규제 모델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아울러 진행 중이다. 혐오표현으로 정의된 표현을 탐지하는 기술은 상당 부분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혐오표현의 정의이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AI 모델은 흑인이 작성한 트윗(tweet)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문제가 나타났고, 이는 일종의 편향에 해당한다. 이는 프로그래머들이 흑인의 표현을 잘 모르는 상태로 인종적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다(Ghaffray, 2019). 편향 관련 문제 외에 대항표현의 규제 문제도 있다. 혐오표현의 대항표현 문제가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더 많은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혐오표현을 금지하기보다는 더 많은 표현을 통해 혐오표현을 무화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대항표현 등을 통해 가능하다(홍성수, 2018a). 그런데 문제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혐오표현 탐지 기술에 의해 현재 다양한 혐오표현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들이 욕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대항표현도 함께 규제되고 있다는 점이다.<sup>[3]</sup> 지금까지 제안된 혐오표현 탐지 모델은 키워드와 욕설, 공격성에 반응하기 때문에 대항표현도 혐오로 탐지된다(Rötger et al. 2021). 박하울 외(2022)는 이러한 맥락에서 대항표현 역시 혐오표현 탐지 모델에 포함하여 자율규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3] 대항표현의 경우, 그것이 공격적이거나 욕설의 형태를 갖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쟁점이 발생한다. 현 시점에서 대항표현의 유형과 양상이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겔버(Gelber, 2002/2019)는 소수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의 특별보고관 케이스는 기술적 규제가 아닌 인간의 개입에 의한 규제가 혐오표현 규제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Kaye, 2019), 이는 대항표현 문제 및 데이터 편향 이슈를 반영하고 혐오표현의 세부 맥락을 판단하는 것이 자동화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더 많은 표현, 특히 억압된 소수자의 더 많은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의 맥락에서 자동화된 규제는 혐오표현 판단의 최종적 권위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기술 규제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콘텐츠의 삭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맡게 되는 모델이 제안되고 있다(Cortiz & Zubiaga, 2020).

### III. 온라인 혐오표현과 인권 침해

#### 1. 차별의 정당화 차원에서 본 온라인 혐오표현

혐오표현의 규제는 혐오표현을 통해 인권 침해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결국 사회적 불신이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두고 있다. 온라인 환경은 이와 같은 인권 침해의 영향력을 확산하고 영속화하는 데 기여한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소셜 미디어가 디지털 불신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 이해보다는 혐오표현이 증가한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Anderson&Rainie, 2019). 온라인을 통해 혐오표현이 아무런 규제 없이 사회적으로 유통될 때, 그 결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차별의 정당화다. 선행 연구들은 온라인 혐오표현에 노출된 사람들의 인식은 해당 집단이 그러한 혐오를 당할 만하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한다(Aguilera-Carnerero & Azeez, 2016). 즉 온라인 혐오표현에의 노출은 혐오의 정당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정당화 과정은 최근의 조사 연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왜 혐오표현을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에 '해당 집단이나 개인의 행태 때문'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50.3%)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남들이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비율(19.7%), '별다른 이유가 없다'거나(19.1%) '재미있어서 한다'(10.5%)는 응답이 그 뒤를 잇는다(국가인권위원회, 2021:79). 이러한 이유들은 모두 혐오표현이 크게 문제되지 않거나, 더 나아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정당성이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이 나타났다. '대상자가 사회규범이나 윤리기준에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26.7%), '대상자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23.4%),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익숙해져서'(22.2%)와 같은 답이 주를 이룬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즉, 혐오표현 사용자는 그 책임을 대상에게 미루며, 대상에게 향하는 자신의 부정적 평가를 정당화하고 있다. 혐오의 대상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혐오를 해도 되는 대상, 좋지 않은 생각을 표출해도 되는 대상, 내가 당한 비난이 있다면 이를 갚아야 하는 대상 등으로 구성된다(조희순, 강신재, 2021).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혐오는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을 공고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혐오가 차별을 직접적으로 매개한다는 논의는 다수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노인 혐오와 관련된 온라인 표현을 계속 접착한 경우, 노인에 대한 낙인 의식 역시 형성되면서 노인 차별 행

위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 혐오표현 자체가 곧바로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고정 관념과 낙인에 영향을 주면서 이것이 차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정순돌, 이연지, 박민선, 2022). 특히 온라인 혐오표현은 비대면 상황에서의 외집단 편향을 심화시킨다. 페이스북에서 로힝야(Rohingya) 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유포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로힝야족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것은 해당 집단이 그러한 차별을 받을 만하다고 믿는 정당화 과정이 메시지를 통해 유통되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다. 소셜 미디어에는 이러한 혐오표현을 특정하게 유포하는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이를 매튜 등은 ‘혐오 노동자’라고 부르며,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혐오를 전파하여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자들을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용자가 존재하고 이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플랫폼이 이러한 혐오 노동자를 식별함으로써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Mathew et al., 2019).

## 2. 차별의 사소화와 둔감화

아이러니와 패러디를 동원하는 혐오표현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일종의 유머로 인지되며, 해당 커뮤니티나 공동체의 관습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러한 혐오표현의 특징 중 하나로, 이것이 특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Fuchs & Schäfer, 2021). 즉, 이러한 표현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소통을 억제하며, 그러한 용어를 알고 사용함으로써 특정 커뮤니티 구성원의 피상적인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Schäfer, 2016). 유머로 소비되는 이러한 냉소적인 태도의 공유는 혐오표현의 유포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인터넷 문화의 일부다.

유머가 혐오표현을 매개할 때 혐오는 사소화된다.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유머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 포드와 퍼거슨(Ford & Ferguson, 2004)이 제시한 편견 규범 이론(prejudiced norm theory)은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유머가 사람들로 하여금 차별을 규범으로 받아들이면서 해당 규범에 쉽게 동의하게 만드는 문제를 다룬다. 연지영과 이훈(2020)은 실험 설계를 통해 유머가 포함된 혐오표현의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혐오표현이 유머를 포함하면 이를 혐오로 인지하지 않거나, 제시된 메시지에 반박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커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더 나아가 유머는 혐오 메시지가 가진 효과를 증폭시키기도 하는데, 혐오를 농담으로 사소하게 치부할수록 해당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즉, 혐오가 놀이가 될 때, 혐오의

심각성이 인지되지 못하고 혐오에 둔감하게 된다(연지영, 이훈, 2020).

이러한 유머의 효과는 성적 대상화 메시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김민정(2021)은 성적 대상화 이미지와 유머가 결합할 때 이를 성차별 및 성적 대상화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처럼 유머 형식의 혐오표현은 혐오에 대한 둔감화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혐오에 대해 민감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저 사회적 무지의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혐오표현에 노출되면 집단에 대한 경멸을 인식하고 이것이 허용된다는 규범 감각이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 이는 차별 금지 규범의 효과를 축소시킨다. 둔감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언어의 공격적 성격을 인식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것이다(Bilewicz, & Soral, 2020). 다양한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공격적인 발언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즉 혐오표현의 공격성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혐오표현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증가한다(Soral et al., 2018). 혐오표현은 이처럼 표적집단이 된 피해자가 경험하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3.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집단 극화와 고립

소수자들은 소수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한다.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홍성수 외, 2021)에 따르면 일상 생활에서의 배제 경험은 심리적 위축감이나 경계심을 강하게 느끼게 만들고,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 등의 경험 수준도 더 높게 나타나게 한다. 성소수자 청년은 해외 사례에서도 청년 일반 집단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경험하고 있으며(Marshall et al., 2011), 국내에서도 청년 평균인 2.74%에 비해 41.5%라는 높은 수준의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성조, 2022). 물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모두 혐오표현 때문만은 아니지만, 혐오표현의 노출이 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연구 결과가 있다(Kuzawiska et al., 2018).

이는 소수자 집단이 혐오표현을 일종의 트라우마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츠(Leets, 2002)는 소수자 집단의 혐오표현 트라우마 경험은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혐오표현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여 특정 장소를 피하거나 행동을 바꾸는 등 자신에 대한 자책이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결국 차별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혐오표현은 소수자 개인에게는 차별을 내면화하면서 고립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혐오는 자기 검열,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제한 등으

로 이어진다(Jane, 2016). 온라인 공격을 받은 소수자 집단 중 38%가 온라인 활용을 줄이거나 온라인 활용 습관을 바꾸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Guynn, 2019).

이와 같은 고립이 실질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미얀마에서 일어난 인종 학살과 폭력 사태에 페이스북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혐오발언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York, 2020/2022). 페이스북 내에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 소수 인종 피해자들은 고립 속에서 실질적 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는 소셜 미디어가 혐오표현을 확산하고 증폭함으로써 발생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견 극화는 사회적 소수자를 고립시키고 발언권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혐오표현을 동반할 때 폭력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 IV.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의 대안: 미디어 리터러시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어왔다. 법적 규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방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가 시도된 바 있다(박미숙, 2020). 대부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지만, 온라인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와 같은 발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에는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혐오표현을 표적화하여 형사범죄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재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의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평등을 증진하는 형성적 규제 역시 제안되고 있다(홍성수, 2019b). 이는 법적 규제로 명확하게 혐오에 근거한 명예훼손을 가중 처벌하거나, 증오선동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공적 혐오 발화 및 차별적 괴롭힘을 금지하는 등 법제도적인 전환과 아울러, 반 차별 교육 및 자율 규제 강화 등의 형성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홍성수, 2019b).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절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반차별 교육을 연계하는 교육 정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온라인 혐오표현이 소셜 미디어의 속성과 플랫폼 정책에 기인한 유포와 확산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혐오차별과 관련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쟁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 1.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와 혐오차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미디어 제작과 활용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유튜브 경험을 위해 활용된다거나, 미디어 기술 습득 및 저작권 교육 등 제작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미디어 리터러시의 일부이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critical media literacy), 즉,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미디어 활용 역량이다.

켈너와 셰어(Kellner & Share, 2019/2022)는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혐오차별 문제에 대응하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주장한다.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재현하고 제시하는 인종, 젠더, 성적 지향, 장애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강조한다. 특히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어떤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언어라는 점에서, 재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Kellner & Share, 2019/2022).

재현의 문제는 ‘누가 재현할 권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리터러시 교육에서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게 하는 것은 차별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쟁크스(Janks, 2010/2019)는 미디어 교육이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권력과 차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오히려 이러한 차별이 사소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차별과 혐오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인식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네스코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media literacy education)이 메시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개인 당사자에게 초점을 두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digital citizenship education)이 개인과 집단의 책임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해 생각하면서 혐오를 식별하는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UNESCO: Gagliardon, 2015).

최근 들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가짜뉴스 판별 교육 등으로 이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메시지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메시지가 가진 혐오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혐오표현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들이 혐오표현의 유포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온라인 공간의 문제는 공유를 통한 유포, 그리고 유포된 메시지를 자신이 회수하기 어려운 특성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에 대한 동기가 큰 상황에서 혐오표현을 단순히 정보나 유머로 인식할 때 혐오표현의 유포에 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Cahyani, 2019).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인권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타문화에 대한 존중을 교육하기 위한 도구로 미디어는 가장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유럽 평의회는 1997년 다문화에 대한 관용 증진의 도구로서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Council of the Europe, 1997). 또한 EU는 2009년에 디지털 환경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권고를 발표하고, 회원국이 의무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Pérez Tornero & Pi, 2010). 이어 2016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함양을 강조하는 권고를 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목적 중 하나로 선동적 정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모든 종류의 혐오와 차별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꼽았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6). EU의 관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켜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하는 도구이다. 유네스코 역시 차별철폐에 대한 로드맵에서 기술을 통한 참여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미디어 기술은 민주주의 지식 공유를 위한 자원 활용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UNESCO, 2021). 유네스코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를 추구하는 것이 디지털 세계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두를 위한 역량 강화와 교육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하에, 문화간 대화 패러다임 촉진을 통해 갈등을 줄이면서 사회적 소수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Grizzle et. al, 2021).

##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재와 쟁점들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청년들에게 종종 혐오와 차별을 인지하게 만드는 마법의 도구처럼 논의되지만 실증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혐오차별이 단지 미디어 능력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혐오차별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부족한 경우,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도구들을 통해서도 혐오차별에 대한 인식 전환을 끌어내지 못했다(Ranieri, & Fabbro, 2016).

이는 미디어 기술 자체보다는 결국 차별에 대한 인지 문제를 교육에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국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2022년 교육과정 내에 새롭게 등장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양상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진로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 역시 다수 시민단체나 교사들의 자율적 활동 등으로 통합적이지는 않다(이승진, 2021:114).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상당 부분이 가짜 뉴스에 초점을 맞춘다. 미디어교육지원법 논의는 가짜뉴스 대응을 그 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며(전윤정, 2018), 사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시민 개인이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외에 혐오차별 대응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논의는 국내에서는 제한적이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 대한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관점이 반영된 것은 한국지능사회정보원의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사이트(<https://ainse.kr/main.do>) 운영 및 각종 사이버 윤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핵심 목적을 네티켓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를 조성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유해성을 인지하도록 하며 이를 대상별로 교육하는 데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성’의 관점은, 전창영 외(2018)가 현재의 방송통신심의를 비판한 바와 같이, 건전한

사회 윤리 및 사회 통합 등으로 설정됨으로써 차별의 금지라는 인권 차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지능사회정보원이 제공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 교재에서 권리와 책임 부분은 명예훼손의 금지, 저작권 침해 금지, 사생활 침해 금지 및 음란물 금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소통과 관계 부분에서는 사이버 불링 및 사이버 성폭력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법적 금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시민성 차원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과정 구성은 차별 금지라는 사회적 가치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채, 혐오표현과 차별 문제를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서의 개인별 윤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맥락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개인 윤리와 인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질서 유지의 맥락은 각종 시민단체 활동에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 V. 정책적 함의

###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반차별 관점

유네스코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패러다임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혐오 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온라인상에서 정보 편향이 존재하며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성별과 인종, 종교 및 각종 재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주요 목표로 본다(Grizzle et. al, 2021: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이와 같이 반차별 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혐오표현을 단순한 단어의 문제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함축한다. 최근의 차별표현들은 욕설의 형태가 아니라 일견 적대적이지 않은, 미묘하면서도 의견의 형태를 가진 표현들을 통해 발화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에 대한 댓글에서는 일반적인 욕설보다는, ‘시민에게 폐를 끼치는 장애인 이동권 주장’에 대한 일견 논리적인 주장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시민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이동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부정하는 차별 발언이지만, 현재의 포털 자율 규제에는 제어되지 않는 차별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을 일일이 규제하고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기반 규제는 욕설 표현을 중심으로 공격성을 분류한다. 따라서 한상희(2022)의 지적처럼, 비록 미디어 리터러시가 바로 만들어내고 적용가능한 종류의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와 반차별 교육을 결합하여 댓글을 통해 유통되는 차별 발화의 문제를 인식하는 시민적 역량을 키움으로써 이렇게 미묘한 형태의 차별 발화를 규제할 수 있다. 혐오차별 댓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러한 댓글이 표현의 자유의 이름을 빌려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반차별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패러다임의 결합이 필요한 이유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구하는 비판적 성찰성이 바로 권력 구조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반차별 교육은 차이와 문화의 범주를 권력 관계와 관련지어 질문하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한 성찰성을 요구한다. 인종주의에 저항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실천적 행위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서의 반차별 교육은 개인이 가진 견해와 구조적 차원을 성찰하는 역량을 요구한다(홍은영, 2021). 이것은 최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요구하는 동질적 집단 극화로부터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편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각종 훈련들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공적 교육 체계 내에서 분명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주로 인터넷 병리에 대한 만병통치약처럼 제안되지만, 사실상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시행되면서 인터넷 사용 시간 규제와 관점에서 부모에게 미디어 교육을 넘기는 방식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어 있다(홍남희, 2021). 공교육 내에서 반차별 관점이라는 명확한 기초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시될 때,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플랫폼의 공적 책임에 대한 시민 감시 등이 구현될 가능성이 생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미디어 활용 시에 가져야 할 윤리 의식을 세대를 넘어 함께 공유해나가는 교육적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교육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담론은 모든 혐오 표현의 문제를 마치 10대만의 이슈로 이해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네이버 댓글의 주 이용자층은 40-50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 역시 미디어 윤리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시민단체 등을 통해 수행되는 학부모 교육과 노년 세대를 위한 기술 교육 등이 이러한 필요성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형성적 규제 담론은 시민 교육의 확대와 캠페인 확대 등을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다(홍성수, 2019b).

## 2. 플랫폼 자율규제와 법적 근거로서의 차별금지법

플랫폼들은 종종 명백한 법적 근거의 부재를 혐오차별 표현 금지의 어려움으로 꼽곤 한다(이동후 외, 2019). 현재의 규제는 공적 규제의 경우 정보통신심의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자율 규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및 각 플랫폼의 자율 규제 정책에 근간하여 이루어진다. 다음 카카오가 증오발언에 대한 카카오 원칙을 발표하고(2021년), 네이버가 댓글 신고 항목에 차별/비하 및 혐오를 포함하게 된 것(2021년)처럼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법들이 유해성을 판단의 근거로 삼다 보니 명백한 욕설 표현이 주로 혐오차별의 이름으로 규제되며 사회적 차별이 오로지 언어 표현의 문제로 환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GS25 손가락 기호 논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혐오차별의 논의가

특정 표현 문제로 축소되면서 사회적 차별 구조에 대한 논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더 나아가 혐오표현의 문제가 갈등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축소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1인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 TV는 성차별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용정책의 관련 항목은 “성별의 차이를 두어 남녀 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sup>[4]</sup>라고 되어 있어, 성차별보다는 갈등 표현을 규제한다. 이러한 관점은 혐오표현을 차별의 문제가 아닌 욕설 등의 문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자율규제는 온라인 표현의 양과 유포 속도 등을 생각할 때 무시할 수 없는 대안이다. 그러므로 기술적 자율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신행(2021)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하는 양적 데이터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인공지능의 혐오표현 판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 언어적·사회문화적 문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인간의 개입이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도 역시 한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인간 개입이 혐오표현 대상과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혐오표현의 모니터링을 외주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니터링 노동자의 정신적 고통과 지위 불안정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 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자율 규제에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게 될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요크(York, 2020)의 지적처럼 혐오표현 규제에 책임은 플랫폼 회사에서 관련 작업을 담당하는 직원 개인이 아니라, 혐오를 적극적으로 자원화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있다. 플랫폼 기업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민정(2020)은 현재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시급한 것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유포하는 혐오표현을 불법정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개입 근거 역시 확보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다수의 혐오표현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바다(홍성수, 2018; 이승현, 2017). 혐오표현은 개인적 감정의 표현이나,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문제적인’ 개인의 문제는 더욱 아니다. 이승현(2017)은 인간을 차별하고 약자 집단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연화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과제로 혐오표현 문제에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법이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우리 사회가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기 때

[4] 아프리카TV 이용정책 <https://www.afreecatv.com/policy/policy6.html>

문이다. 이 법을 바탕으로 언론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여 혐오의 유포 경로를 차단하고, 국가의 평등 실현에 대한 의무를 구체화함으로써 국가가 혐오표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홍성수, 2018b). 제도적 차별 철폐에 대한 국가의 의지 및 사회 가치로서의 반차별을 제시하는 것이 차별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가 단순히 말의 규제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차별 금지에 근간한 타인 존중에 대한 관점 정립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21).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202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민정(2020).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방송문화연구>, 32(1), 7-54.
- 김민정(2021). “성평등의식이 차이를 만듭니다”: 온라인상의 성차별 혐오표현 사례별 시민인식조사. <미디어, 젠더 & 문화>, 36(1), 59-95.
- 김수아, 김민정, 이동후, 홍성일(2020).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규제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1, 203-230.
- 노현숙(2022). 사적 미디어로서의 유튜브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삭제에 관한 논의. <미디어와 인격권>, 8(1), 49-91.
- 문화체육관광부(2020). <혐오 표현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서울:문화체육관광부.
- 박아란(2020). 디지털 인격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비교법 연구.<한국언론학보>, 64(3), 5-46.
- 박지원(2016). 혐오표현의 제재 입법에 관한 소고 - 주요국 입법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7(3), 103-136.
- 박하을, 박현아, 송상헌(2022). 혐오와 대항: 혐오표현 탐지 모델 평가를 위한 대항표현 데이터셋 구축. <담화와 인지>, 29(2), 1-23.
- 송현정(2022). 미국 연방대법원의 혐오표현 관련 법리와 판단기준. <미국헌법연구>, 33(1), 113-144.
- 윤은주(2022). 정치화된 혐오 표현에 대한 비판 :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37, 1-26.
- 이동후, 김민정, 김수아, 홍성일(2019). <온라인 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방송통신위원회.
- 이승진(2021). 미디어교육지원법 입법방향 논의: 2007~2020년 미디어교육법 발의안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3), 103-127.
- 이승현, 이준일, 정강자, 조혜인, 한상희, 홍성수(2019). <혐오표현 리포트>. 서울:국가인권위원회.
- 이승현(2017). 해외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정책 소개와 시사점. <언론과법>, 16(2), 1-34.
- 이재진, 이영희(2020). <혐오(嫌惡)와 모욕(侮辱) 사이>. 서울: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준웅, 박장희(2018). 모든 더러운 말들: 증오발언 규제론 및 규제반대론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59(3), 1-43.
- 이현정(2022).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와 차별 금지. <인권법평론>, (28), 531-563.
- 이희욱(2022). 메타버스 내 적대적 언행(Hate Speech)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15(1), 193-216.
- 전윤경(2018).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입법에 관한 논의. <교육법학연구>, 30(3), 81-109.
- 전창영,나은희,최철호,김민정 (20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방송통신연구>, 104호, 70-102.
- 정성조(2022).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한다 국회 토론회 자료집(2022.2.3).
- 정순돌,이언지, 박민선(2022). 59세 이하 성인 집단의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정도가 노인 차별행위에 미치는 영향: 노인 낙인인식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77(2), 183-218.
- 조화순 강신재(2021). 혐오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찾아서. <네트워크와 혐오사회>. 서울: 한올아카데미.
- 중앙일보(2022.06.27). 본적 없는 혐오 판진다...요즘 “틀딱” “잼민” 이 말 폭증한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2210>
- 한상희(2022). 미디어리터러시는 ‘뽕’이 아닙니다. [http://www.presswatch.or.kr/board/view.asp?id=230&bi\\_bidx=1276](http://www.presswatch.or.kr/board/view.asp?id=230&bi_bidx=1276)
- 홍남희(2021). 미디어 리터러시 담론과 아동, 청소년: 미디어 이용 취약층에서 일탈의 프로슈머까지. <한국언론정보학보>, 107, 149-180.

- 홍성수, 김정혜, 노진석, 류민희, 이승현, 이주영, 조승미(2016).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홍성수(2018a). <말이 칼이 될 때>. 서울: 이크로스.
- 홍성수(2018b).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이화젠더법학*, 10(3), 1-38.
- 홍성수(2019a). 혐오(hate)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 <법학연구>,30(2),191-228.
- 홍성수(2019b).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법철학연구>, 22(3), 27-64
- Aguilera-Carnerero, C., & Azeze, A. H. (2016). 'Islamonausa, nor Islamophobia': The many faces of cyber hate speech. *Journal of Arab & Muslim media research*, 9(1), 21-40.
- Anderson, J., & Rainie, L. (2019, December 31). Concerns about the future of people's well-being and digital life. Retrieved August 21, 2020, from <https://www.pewresearch.org/internet/2018/04/17/concerns-about-the-future-of-peoples-well-being/>
- Bilewicz, M., & Soral, W. (2020). Hate speech epidemic. The dynamic effects of derogatory language on intergroup relations and political radicalization. *Political Psychology*, 41, 3-33.
- Cahyani, I. P. (2019). Digital literacy of lecturers as whatsapp group users in spreading hoax informations and hate speech. *Expose: Jurnal Ilmu Komunikasi*, 2(2), 147-163.
- Cortiz, D., & Zubiaga, A. (2020). Ethical and technical challenges of AI in tackling hate speech. *The International Review of Information Ethics*, 29.
- Council of Europe(1997). Recommendation No. R (97) 21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media and the promotion of a culture of tolerance.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50513b>
- Council of European Union(2016). Council Conclusions of 30 May 2016 on developing media literacy and critical thinking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16XG0614\(01\)&from=DE](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16XG0614(01)&from=DE)
- Facebook(2019). Combating Hate and Extremism. <https://about.fb.com/news/2019/09/combating-hate-and-extremism/>
- Ford, T. E., & Ferguson, M. A. (2004). Social consequences of disparagement humor: A prejudiced norm the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8(1), 79-94.
- Fortuna, P., & Nunes, S. (2018). A survey on automatic detection of hate speech in text. *ACM Computing Surveys (CSUR)*, 51(4), 1-30.
- Fuchs, T., & Schäfer, F. (2021). Normalizing misogyny: hate speech and verbal abuse of female politicians on Japanese Twitter. *Japan forum*, 33(4), pp. 553-579.
- Gagliardone, I., Gal, D., Alves, T. & Martinez, G. (2015). Countering online hate speech. UNESCO.
- Ghaffary, S. (2019. 8. 15.). The algorithms that detect hate speech online are biased against black people. Vox.<https://www.vox.com/recode/2019/8/15/20806384/social-media-hate-speech-bias-blackafrican-american-facebook-twitter>.
- Grizzle, A., Wilson, C., Tuazon, R., Cheung, C.K., Lau, J., Rache, M. F., Gordon, D., Akyempong K., Singh, J. Carr, P., Stewart, K., Tayie, S., Suraj, O., Jaakkola, M., Thésée, G., & Gulston, C. (2021). *Media and Information Literate Citizens: Think Critically, Click Wisely*. UNESCO.
- Guynn, J. (2019, February 13). If you've been harassed online, you're not alone. More than half of Americans say they've experienced hate. *USA Today*. <https://www.usatoday.com/story/news/2019/02/13/study-most-americans-have-been-targeted-hateful-speech-online/2846987002/>
- Jane, E. A. (2016). Online misogyny and feminist digilantism. *Continuum*, 30(3), 284-297.
- Janks, H.(2019). <리터러시와 권력>.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Kaye, D. (201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General Assembly on online hate speech <https://www.ohchr.org/en/documents/thematic-reports/a74486-report-online-hate-speech>
- Kellner, D., & Share, J. (2019). *The critical media literacy guide: Engaging media and transforming education*. Brill.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가이드>. 서울: 살림터.
- Leets, L. (2002). Experiencing hate speech: Perceptions and responses to anti-semitism and antigay speech. *Journal of social issues*, 58(2), 341-361.
- Marshal, M. P., Dietz, L. J., Friedman, M. S., Stall, R., Smith, H. A., McGinley, J. & Brent, D. A. (2011). Suicidality and depression disparities between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youth: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9(2), 115-123.
- Mathew, B., Dutt, R., Goyal, P., & Mukherjee, A. (2019, June). Spread of hate speech in online social media. *In Proceedings of the 10th ACM conference on web science* (pp. 173-182).
- Meske, C., & Bunde, E. (2022). Design principles for user interfaces in AI-Based decision support systems: The case of explainable hate speech detection. *Information Systems Frontiers*, 1-31.
- Nagle, J. (2018). Twitter, cyber-violence, and the need for a critical social media literacy in teacher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76, 86-94.
- Pérez Tornero, J. M., & Pi, M. (2010). A new horizon: Media literacy assessment and children in Europe. *In New questions, new insights, new approaches: Contributions to the research forum at the World Summit on Media for Children and Youth* (pp. 3-17). Nordicom.
- Posetti, J. et al.(2021). The Chilling: Global Trends in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ists. UNESCO.
- Ranieri, M., & Fabbro, F. (2016). Questioning discrimination through critical media literacy. Findings from seven European countries. *Europ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5(4), 462-479.
- Schäfer, F. (2016). Contentious politics and the emergence of a connected and transnational 'public sphere': 'connective sociality' and 'latent public opinion' in post-democratic and Post-3/11 Japan. Universal values in a post-secular era. *Tokyo: Sobunsha*, 35-70.
- Soral, W., Bilewicz, M., & Winiewski, M. (2018). Exposure to hate speech increases prejudice through desensitization. *Aggressive behavior*, 44(2), 136-146.
- UNESCO(2021). Towards building a roadmap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s. UNESCO.
- York, J. (2020). *Silicon Values*. Verso. 방진이 역(2022).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서울:책세상.



2022년 제1호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기 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은이 김수아  
편 집 김은영 백영연 김혜수  
발간일 2022년 11월 16일  
퍼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 열 김보람  
디자인 수카디자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자우편 ir.team@unesco.or.kr

간행물 등록번호 IR-2022-RP-2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는 외교부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www.unesco.or.kr](http://www.unesco.or.kr)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 UNESCO ISSUE BRIEF